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변리사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 박상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03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16
1. 유사 입법례: 발명진흥법	16
2. 유사 입법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8
3. 제21대 제출 유사 법률안(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상웅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1. 2.
3. 회부연월일 : 2025. 1.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식재산이 기업의 주요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경제·사법·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지식재산 감정(鑑定)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특허권 평가액 부풀리기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되면서,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필요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음.

한편, 현행 「발명진흥법」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변리사가 수행하는 감정 업무에 대해서는 가치평가의 기준이나 일정한 절차 등이 없어, 법률소비자는 변리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알 수 없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변리사가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명 등의 평가기관과 동일하게 「발명진흥법」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감정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식

재산 가치평가의 품질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변리사가 발명 등의 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7조의4제1항 신설).
- 나. 변리사는 발명 등의 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조의4제2항 및 제24조제3항제2호 신설).
- 다. 변리사는 발명 등의 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감정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특허청장 또는 「발명진흥법」 제31조의6에 따른 평가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의5제1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변리사가 「발명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이하 “발명 등의 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명진흥법」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변리사가 지식재산에 대한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감정 결과서 등을 평가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제출된 감정 결과서 등을 조사·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신설 등).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7조의4(변리사의 감정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등) ① 변리사는 「발명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이하 “발명 등의 평가”라 한다)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변리사는 제1항에 따른 감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허청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해

<신 설>

당하는 감정 업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를 심사하여 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 정보의 대상,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5(감정 결과의 제출 등) ① 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감정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발명진흥법」 제31조의6에 따른 평가관리센터의 장(이하 이 조에서 “평가관리센터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라 자신이 대리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발명 등의 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된 변리사가 발명 등의 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24조(벌칙) ①·② (생략)

③ 제8조의5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신설>

제27조(과태료) ① (생략)

<신설>

3. 「상법」 제299조의2 또는 같은 법 제422조에 따른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된 감정 결과서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정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정보체계에 관하여는 「발명진흥법」 제31조의4 및 제31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변리사”로 본다.

제24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제8조의5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2. 제7조의4제2항을 위반한 자

제2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변리사에게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 -----.
--	--------------------------------------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이 기업의 주요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경제·사법·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어 지식재산의 법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그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는 것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혁신 성장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현행 「발명진흥법」 제28조 및 제31조의4 등¹⁾에 따라 ‘발명 등의

1)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발명 등의 평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이하 “배치설계”라 한다)

제28조(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이전, 거래, 사업화 등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그 평가 결과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평가 결과서를 포함한다)를 의뢰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의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① 특허청장은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가 발급된 후 직권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가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에 대한 표본조사(이하 “표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의5(평가정보체계 구축·운영) ① 특허청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를 위하여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발명 등의 평가 결과 및 그와 관련된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이하 “평가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²⁾에 대해서는 특허청장을 통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2023년 7월부터 개정 법률 시행), 일반 변리사가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업무에 대해서는 가치평가의 기준이나 일정한 절차 등이 없는 상황임.

[표 2] 現 「발명진흥법」에 따른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체계

기준 마련	품질 관리 및 의견 제공	정보 수집 · 관리
• 평가기준 수립 • 평가기법 개발	• (타당성조사) 이해관계인의 요청 또는 직권에 따라 평가기준 준수여부 등 조사 후 조사결과 제공 • (표본 조사) 평가결과에 대해 일정비율로 표본을 추출하여 품질 점검	• 평가정보체계 운영 - 가치평가 정보수집 - 정보 DB 구축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변리사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법원 감정,³⁾ 상속세·증여세 부과 등 세무업무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⁵⁾ 법률 소비자 사이에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를 통한 지식재산에 대한 가

2) 발명 및 상표(제2조제11호가목), 영업비밀(나목),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다목)의 경제적 가치 평가

3) 2017~2022년 법원은 변리사회에 총 44건의 IP 가치평가 감정인 추천을 의뢰함(자료: 특허청).

4) 특허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특허권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에 해당함(국세청 법령해석-2305, '17.10).

5) 변리사 업무 범위 분석에 따르면, 출원등록감정이 5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심판소송 11%, 가치평가 2.0% 등인 것으로 나타남(변리업 실태조사, 2019년, 특허청·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업무 범위 분석>

수행업무	평균(%)	수행업무	평균(%)	수행업무	평균(%)
출원등록감정	50.6	조사분석업무	8.2	기술거래	2.3
심판소송	11.0	기획연구	5.0	가치평가	2.0
아웃고잉(PCT 포함)	10.3	고객관리 영업	4.3	정책연구업무	1.1
IP 관련 컨설팅	9.4	해외 분쟁	3.8	기타	3.1

치평가 수요가 높아⁶⁾ 이러한 업무 영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변리사의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검증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식재산 평가액 부풀리기로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는 사건이 발생⁷⁾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변리사가 지식재산 가치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변리사가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변리사에게 감정 결과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특허청장에 대하여 감정 결과서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 실시와 평가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기관과 유사하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개정안 제7조의4제1항은 변리사가 발명 등의 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31조의2⁸⁾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로써 변리사가

6)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하는 관계자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의뢰에 대하여 변리사(77%), 회계사(11%), 감정평가사(5.7%), 변호사(2.9%) 순으로 선호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음(“IP 가치평가, 변리사에 맡기고 싶다”, 파이낸셜뉴스, 2023.8.17.).

7) 연합뉴스, “1천800명 올린 주가조작 뒤엔 변리사 ‘특허가치 뺑뺑이’ 있었다”, 2020.7.

8) 「발명진흥법」

제31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 ①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 시 평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변리사법」에 따라 징계⁹⁾ 등 제재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¹⁰⁾.

또한, 개정안 제7조의5제1항은 변리사가 감정 결과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를 ① 제2조11)에 따라 자신이 대리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발명 등의 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제1호), ② 특허청장이 관리·공시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 변리사의 경우(제2호), ③ 현물출자(「상법」 제299조의2¹²⁾ 및 제422조¹³⁾에 따른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제3호), ④ 상속세·증여세 관련 감정¹⁴⁾ 업무를 수행한 경우(제4호)로 한정하고 있는데,

9) 「변리사법」

제17조(징계) ①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10) 또한, 개정안은 변리사가 감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별도의 벌칙 규정도 함께 마련하고 있음(안 제7조의4제2항 및 제24조제3항제2호).

11) 「변리사법」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12) 「상법」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9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제299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이는 변리사에 의한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선별하여 적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참고로 「발명진흥법」 외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개정안과 유사하게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하거나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감정평가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정평가 정보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참고자료 2 참조).

개정안에 의할 경우 기존에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지식재산에 관한 평가기준이 ‘변리사’가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하여까지 확대하여 적용됨으로써 이러한 평가기준이 지식재산 가치평가에서 보다 보편적인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고,

변리사의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해서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 유사하게 ‘타당성 조사’, ‘표본 조사’ 및 평가정보체계 운영 등 품질관리체계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장에 대한 공신력이 전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반적으로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변리사법」 제2조에서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¹⁵⁾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변리사의 감정 업무에 특허 등 권리의 발생·변경·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법률 감정’ 외에 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가액 감정’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일부 이견¹⁶⁾이 있는데,

개정안은 ‘「발명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¹⁷⁾(발명 및 상표 등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규정(안 제7조의4제1항 및 제7조의5제1항제1호)함으로써 변리사의 감정 업무에

15) 사전적 의미의 ‘감정(鑑定)’은 ‘전문적인 지식·기술로 물건의 특성이나 가치, 진위 따위를 판정하는 것’을 뜻함.

16) 특허청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감정’은 ‘법률 감정’ 외에 ‘가액 감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검찰청·국세청 등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도 이러한 해석에 따라 변리사의 가액 감정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나, 감정평가사협회는 이는 ‘법률 감정’에 국한된 것으로 ‘가액 감정’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임.

- ◆ ‘대리’ 업무와는 달리, ‘감정’ 업무는 그 대상이 ①‘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한 것’으로 제한 해석되지 않으며, ②그 범위도 ‘권리성’ 외에, ‘기술성·사업성·시장성’ 등 분석을 포함함
- (쟁점①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21.3)에서, ‘특허청·법원’과 관계없는 ‘민간영역’에서의 특허 등 권리성 분석이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감정’에 해당한다고 판단
 - (쟁점② 관련) 대법원은 법 해석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8다298409)
 - ‘감정’의 통상적 의미* 고려시, 변리사법 제2조의 ‘감정’은 특허 등의 가치를 판정하기 위한 제반 분석으로서, ‘권리성·기술성·사업성·시장성’ 등 분석을 망라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 * ‘감정’의 사전적 의미: ① 사물의 특성이나 좋고 나쁨을 분별·판정하는 것 (표준국어대사전), ② 전문지식·기술로 잘 살펴보아, 그 특성·가치·진위 등을 판정하는 것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17)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발명진흥법」 제2조제11호)

‘가액 감정’(경제적 가치평가)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이와 함께 「상법」 제299조의2 및 제422조에 따른 현물출자 관련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¹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상속세·증여세 관련 감정’¹⁹⁾이 변리사의 감정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률로 명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발명 등의 평가기관, 기술평가기관,²⁰⁾ 변리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여러 평가기관이나 전문자격사에 의해 지식재산 가치평가가 수행되고 있으나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은 부족한 상황으로,

18) 관련 법령 등에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변리사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법원은 현재 변리사회에 IP 가치평가 감정인 추천을 의뢰하고 있음(2017~2022년 총 44건의 의뢰).

(상업등기선례 제2-15호) 상법 제299조의 2에 따른 ‘공인된 감정인’이란 현물출자된 각 재산의 유형에 따라 법률에 의해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감정인을 말하는바, 그 구체적 예로는 부동산가액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에 의해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및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회계에 관한 감정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등을 들 수 있다.

19) 관련 법령에서 감정 전문가로서 변리사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세청은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특허법인이 무체재산권등의 평가에서 전문가에 해당한다고 공시하고 있음(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④영 제59조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권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절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사업화되거나 사업화 예정인 기술의 가치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과 같이 변리사에 의한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우 지식재산 가치평가 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변리사를 대상으로 공적인 기관에 의한 전문적인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²¹⁾

특허청은 현행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감정’에는 ‘법률 감정’ 외에 ‘가액 감정’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바,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변리사가 이미 수행 중인 지식재산 가치평가 업무에 대하여 공적인 품질관리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일 뿐 변리사의 실질적인 업무영역에는 변동이 없고 다른 자격사·기관이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으며,

법원·검찰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미 변리사에게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활발하게 의뢰하고 있는 등 변리사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가치평가 과정에서 기준·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발명 등 평가기관’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21) 특허청은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관한 국가 차원의 전문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5년부터 특허청 소속기관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통해 ‘IP 가치평가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운영 중으로(2024년 12월 초급과정 시범운영), 개정안(제7조의4제3항 관련)에 따라 특허청장이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 변리사’ 목록을 관리하게 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반영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반면 감정평가사협회는 개정안은 변리사가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품질관리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나 ‘경제적 가치평가’는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변리사의 가치평가에 대한 품질관리는 「발명진흥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²²⁾에 따라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임.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는 변리사의 ‘감정’ 업무에 ‘경제적 가치평가’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련된 규정을 신설(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의 특례 등을 규정하거나²³⁾ 변리사등이 수행하는 특허 등의 가액감정에 대한 품질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²⁴⁾)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22)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가 소속된 기관이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정보를 관리하는 체계임.

23) 이주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2665호, 2021. 9. 24. 발의)(상세사항 참고자료3 참조)

① 변리사의 업무 중 ‘대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에 대해서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감정 업무’의 범위에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포함됨을 명시하고(안 제2조),

② 산업재산권을 기업에 현물출자하거나 상속·증여하기 위하여 변리사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내용을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둬(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신설).

24) 윤관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8695호, 2022. 12. 6. 발의)(상세사항 참고자료3 참조)

① 변리사의 업무 중 ‘대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에 대해서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감정(鑑定)’ 업무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평가’하는 업무로 변경하고,(안 제2조)

② 변리사등이 수행하는 특허등의 가액감정에 대한 품질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2조의2~제2조의6 신설, 안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

문 의 처
02)6788-5458

제28조(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이전, 거래, 사업화 등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전문인력, 평가 조직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발명 등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그 평가 결과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평가 결과서를 포함한다)를 의뢰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발명 등의 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평가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평가수수료
3. 평가기관과의 업무협약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 ①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 시 평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의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① 특허청장은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가 발급된 후 직권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가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

② 특허청장은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관, 해당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및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특허청장은 국가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요청을 한 경우 타당성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 ④ 특허청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에 대한 표본조사(이하 “표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5(평가정보체계 구축·운영) ① 특허청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를 위하여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발명 등의 평가 결과 및 그와 관련된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이하 “평가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평가기관은 평가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평가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 ③ 평가기관은 제28조제3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받을 때 의뢰한 자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가 타당성조사, 표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④ 특허청장은 평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 ⑤ 그 밖에 평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6(평가관리센터) ①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관리 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관리센터를 둔다.

- ② 평가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명 등의 평가와 관련된 연구·교육 및 홍보
 2. 평가기준의 수립 지원
 3. 평가기법의 개발·보급
 4.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
 5. 평가정보체계 구축·운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조(기준) ①·② (생략)

③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이하 “실무기준”이라 한다)의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하 “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감정평가서)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한 후 서명과 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도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직권으로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운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등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정보체계(이하 “감정평가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 정보체계 등록 대상인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발급할 때 해당 의뢰인에게 그 등록에 대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제46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및 같은조 제3항에 따른 표본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참고 3

제21대 제출 유사 법률안(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2665호, 2021. 9. 24. 발의)

현 행	개 정 안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1.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대리 2.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감정(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사무
<신 설>	제2조의2(산업재산권의 출자특례) 산업재산권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변리사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2조의3(상속 또는 증여 시 산업재산권의 평가에 대한 특례) 상속 또는 증여 시 산업재산권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변리사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 윤관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8695호, 2022. 12. 6. 발의)

현행	개정안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제2조(업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
<신설>	1.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대리
<신설>	2.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평가(이하 “가액감정”이라 한다)하는 것과 그 밖의 사무
<신설>	제2조의2(가액감정의 의뢰 및 추천) ① 누구든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가액감정이 필요한 경우 변리사, 제6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특허법인 및 제6조의12에 따라 인가를 받은 특허법인(유한)(이하 “변리사등”이라 한다)에 그 가액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가액감정을 의뢰하려는 자는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에 가액감정을 수행할 수 있는 변리사등에 대한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변리사등이 가액감정을 의뢰받은 때에는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가액감정의 기준에 따라 가액감정을 수행하고 그 가액감정 결과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가액감정 결과서를 포함한다. 이하 “가액감정 결과서”라 한다)를 가액감정을 의뢰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액감정 의뢰의 절차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추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2조의3(가액감정의 기준 등) ① 특허청장은 가액감정의

현행	개정안
	<u>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액감정의 기준(이하 “가액감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u> <u>② 변리사등이 가액감정을 수행할 경우 가액감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u> <u>③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는 가액감정기준을 위반하여 가액감정을 수행한 변리사등을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u> <u>④ 특허청장은 가액감정기준의 지속적인 보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가액감정기준 개발 전문기관(이하 “기준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u> <u>⑤ 특허청장은 기준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u>⑥ 그 밖에 가액감정기준의 마련과 기준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방법·절차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2조의4(가액감정 기법의 개발 및 보급) ① 특허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가액감정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액감정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u> <u>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가액감정 기법을 변리사등에 보급하여 그 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③ 특허청장은 기준관리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기법의 개발·보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u> <u>④ 제1항에 따른 가액감정 기법의 개발·보급 및 제2항에 따른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2조의5(가액감정 결과의 타당성조사 등) ① 특허청장은 가액감정 결과서가 발급된 후 직권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감정이 가액감정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u>

<신 설>

<신 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졌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u>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 ② 특허청장은 타당성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리사등, 가액감정을 의뢰한 자 및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타당성조사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가액감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감정 결과서에 대한 표본조사(이하 “표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타당성조사 또는 표본조사가 필요한 경우 기준관리전문기관에 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조의6(가액감정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특허청장은 가액감정 결과와 그와 관련된 자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이하 “가액감정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기준관리전문기관에 가액감정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변리사등은 가액감정 정보체계 구축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가액감정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기준관리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1.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추천 요청과 이에 따른 대한변리사회의 추천을 받아 가액감정 업무를 수행한 변리사등 2. 「상법」 제299조의2 또는 같은 법 제422조에 따른 감정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액감정을 수행한 변리사등

현행	개정안
제23조(도용 및 누설의 죄) (생략) <u><신설></u>	④ 변리사등이 가액감정을 의뢰받은 때에는 의뢰한 자에게 가액감정 결과서 및 관련 자료가 타당성조사, 표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기준관리전문기관의 장에게 가액감정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활용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준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가액감정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도용 및 누설의 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액감정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한 변리사등 2. 가액감정 정보체계에 보관·관리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한 가액감정 정보체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
제27조(과태료) ① (생략) <u><신설></u>	제2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② 제2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가액감정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변리사등에게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제28조(업무의 위탁) (생략) <u><신설></u>	제28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기준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